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주요 변경내용 및 자격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 05. 1. 30. ~ ' 14. 2. 28.까지의 자격기준 해당자의 자격증 신청

-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행 기준(2005.1.30. ~ 2014.2.28.)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현행의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대학(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 등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제외
 - ※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자격증 신청 전 시·군·구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경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증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주요 변경내용

○ 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및 사전직무교육 신설

구분	현행 기준 (2005.1.30. ~ 2014.2.28.)	개정 기준 (2014.3.1. ~)
일반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유치원 정교사 2급 + 5년 경력	유치원 정교사 1급 + 3년 경력
가정	보육교사 2급 + 2년 경력	보육교사 1급 + 1년 경력
장애아전담	일반자격 +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전공	동일
	일반자격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일반자격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삭제
사전직무교육 (신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 을 이수해야 함	

○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구분	현행 기준 (2005.1.30. ~ 2014.2.28.)	개정 기준 (2014.3.1. ~)
보육교사 2급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 1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보육교사 3급 + 2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또는 보육업무 경력인정 범위 변경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현행 기준 (2005.1.30. ~ 2014.2.28.)	개정 기준 (2014.3.1. ~)
<p>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p> <p>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p> <p>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p> <p>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p> <p>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p> <p>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p>	<p>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p> <p>가. 어린이집에서 <u>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u></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u>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u> 근무한 경력</p> <p>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u>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u>으로 근무한 경력</p> <p>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p> <p>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p> <p>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p>

- 보육업무 경력

현행 기준 (2005.1.30. ~ 2014.2.28.)	개정 기준 (2014.3.1. ~)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u>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u>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u>

□ 자격심사 시 경력산정 기준 안내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자격증 신청 전 시·군·구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경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및 임면보고 문의는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

-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임용되어 다음해 2월 28일 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1년' 의 경력을 인정받으나, 3월 2일 이후 임용된 경우 "경력 1년" 요건을 갖추지 못함
- ex) 2013년 2월 25일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급 승급교육을 수료한자라면 3급 취득 후 만 1년의 경력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변경되는 기준(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 2년 + 2급 승급교육)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자격 발급 가능

◆ 보육사업기획과-941호, '13.2.28.

영유아보육법 개정령 시행(2014.3.1.)에 따라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자가 현행 법에 의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늦어도 2013. 3. 1일자로 임용이 되어 2014. 2. 28일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1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자격기준 적용 예시

- (보육교사 2급 승급)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1년) 2013.3.1.~2014.2.28.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
---------	---	-------------------------------------	---	---------	---	-----------------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1년미만) 2013.3.2.~2014.2.28.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X)
---------	---	---------------------------------------	---	---------	---	----------------

- (가정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급	+	보육업무 경력(2년) 2012.3.1.~2014.2.28.	=	가정 어린이집 원장* (O)
---------	---	-------------------------------------	---	--------------------

보육교사 2급	+	보육업무 경력(2년미만) 2012.3.2.~2014.2.28.	=	가정 어린이집 원장 (X)
---------	---	---------------------------------------	---	-------------------

- (일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2년) 2012.3.1.~2014.2.28.	=	일반 어린이집 원장* (O)
---------	---	--	---	--------------------

보육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2년미만) 2012.3.2.~2014.2.28.	=	일반 어린이집 원장 (X)
---------	---	--	---	-------------------

* 단, 현행기준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인터넷신청을 완료해야 함